
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 취소 공고

「주택법」 제21조의4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인정업체

업체명	주 소	대표자
(주)세라그린	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79-4	김봉태
(주)나라텍이엔씨	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63-9	박대호

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내용

인정구조명	인정번호	콘크리트 슬래브두께	총두께	인정등급
에코빌 180-ST20-1	제09-17호	180 mm 이상	280 mm 이상	경량 : 2급 중량 : 3급
에코빌 150-ST20-1	제09-18호	150 mm 이상	250 mm 이상	경량 : 3급 중량 : 4급
NSL 반건식 온돌시스템	제09-19호	180 mm 이상	282 mm 이상	경량 : 1급 중량 : 3급

3. 취소근거 : 「주택법」 제21조의4 제2항 제4호

2014년 8월 19일

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